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DNA DB 및 LIMS 유지관리 사업
○ 물 품 명 : Veritas Flex 5260
○ 발주자(갑) : 대검찰청
○ 제조사/공급사(을) : ㈜매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DNA DB 및 LIMS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상기 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②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 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부가세 포함 4,980,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제출)하여야 한다.

<유 의 사 항>

본 계약 기간 중 발주기관의 조직 개편(분리, 신설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설 또는 변경된 기관으로 승계된 과업을 동일한 계약 조건(단가, 서비스 수준)으로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른 계약 주체 변경, 과업 범위 조정, 계약 기간 변경 등 변경계약 체결 요청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기관 분리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자산의 설치 장소가 이전되거나 관리 주체가 다수 기관으로 나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장소 및 기관에 대하여 본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6년 07월 20일

"갑" : 대검찰청 검찰총장 (인)

"을" : ㈜매 사 장 종 효 (인)